



재해 개요

- 2018.12.5(수) 단양군 대강면 소재 ○○건설(주)에서 시공하는 「중앙선 도담~영천 복선전철 건설공사」 현장에서 ○○건설 소속 작업자(펌프카 운전원)가 경사갱 내부 보조급전소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 작업용 펌프카 후미에서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유도 작업 중 후진하는 믹서트럭과 펌프카 사이에 끼여 사망함



펌프카와 콘크리트 믹서트럭 사이 끼임



재해 발생 원인

- 콘크리트 믹서트럭과 접촉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차량 유도
 - 2대의 믹서트럭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는 경우 차량 사이 간격이 40cm 이내이고, 차량과 통로 벽면과의 간격이 20cm 이내로 협소하며 터널 내부의 어두운 장소로서 차량 유도 작업 시 운행하는 차량과 접촉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차량 유도 중 사고발생
- 콘크리트 믹서트럭 유도방법 부적합
 - 전담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고, 별도의 신호방법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믹서트럭의 후진을 유도
 - 차량 한 대만 진입시켜 안전한 유도공간을 확보하고 전담유도자를 배치하는 등의 사전 작업계획 미수립



재해 예방 대책

- 근로자 출입통제 및 전담유도자 배치
 - 전담 유도자를 배치하여 별도의 신호방법을 정해 신호토록 하고, 터널작업 신호수용 조끼 착용 및 신호봉 등을 사용토록 조치
- 믹서트럭 장비 사용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및 작업계획 수립
 - 믹서트럭이 진입하는 통로의 지반상태, 폭을 사전에 조사한 후 통로 내 안전하게 차량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는 등 사전에 장비 작업계획을 수립하며 근로자에게 충분히 숙지토록 조치
- 믹서트럭의 접근 한계거리 설정
 - 펌프카 후미에 믹서트럭의 접근 한계거리를 설정하고, 차량이 접근 한계거리를 넘지 못하도록 충분한 강도와 높이를 가진 멈춤턱 등을 외부 충격에 움직이지 않고 장비 운전자가 인지하도록 견고하게 설치

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, 직영, 하청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